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 중 “2020”을 “202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21”을 “2022”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월 1일부터 <u>2020</u> 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2. ----- <u>2021</u> ----- -----: -----
3. <u>2021</u> 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3. <u>2022</u> -----: ----- -----